

심 사 보 고 서

충청북도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
일부개정조례안

충청북도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심 사 보 고 서

의안 번호	156
----------	-----

2022. 12. 16.(금)
정책복지위원회

1. 심사경과

가. 제출자 : 이상정 의원 등 7명

나. 제출일자 : 2022년 11월 22일

다. 회부일자 : 2022년 11월 23일

라. 상정일자 : 2022년 12월 6일

- 제405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3차 정책복지위원회

마. 주요내용

- 제안설명, 검토보고, 질의답변, 심사의결(원안가결)

2. 제안 설명 요지 (제안설명자 : 이상정 의원)

가. 제안사유

- 지방자치단체는 재향군인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「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」이 개정됨에 따라 재향군인회의 운영에 필요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 명시적인 근거를 마련하고, 법제처의 「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」에 따라 용어 및 띄어쓰기를 일부 정비하려는 것임.

나. 주요내용

- 법령 개정에 따라 재향군인회의 운영에 필요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음. (안 제5조)

3. 검토보고 요지 (김대진 수석전문위원)

가. 제출배경

- 「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」 개정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재향군인회에 사업비 외 운영에 필요한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는 근거 규정이 마련되었으나, 현행 조례에서는 사업에 관해서만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,
- 상위법령에 부합하도록 재향군인회에 대한 운영비 지원 근거를 조례에 명확하게 규정하고자 함.

나. 주요내용 검토

- 안 제1조, 제2조는 조례에서 인용된 상위법령의 제명과 일치하도록 「대한민국 재향군인회법」을 「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」으로 개정하는 것으로 타당함.
- 안 제4조는 법제처의 「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」에 따라 법령문의 관용적 표현인 “기타”를 “그 밖에”로 수정한 것으로 타당함.
- 안 제5조는 「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」 제16조제2항이 개정됨에 따라 재향군인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보조금을 지원하는 것에 대한 조례상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임.

〈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 관련 조항 개정 내용 비교〉

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 개정 전	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 개정 후
<p>제16조(재정) ① 재향군인회의 재정은 회원의 회비, 사업수입, 그 밖의 수입으로 충당한다.</p> <p><u>② 국가는 재향군인회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.</u></p> <p>③ 지방자치단체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재향군인회의 사업에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.</p>	<p>제16조(재정) ① 재향군인회의 재정은 회원의 회비, 사업수입, 그 밖의 수입으로 충당한다.</p> <p><u>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재향군인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.</u></p> <p>③ 삭제</p>

다. 종합 검토의견

- 현재 충청북도는 「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」 제16조제2항 “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재향군인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” 에 근거하여 2018년부터 재향군인회에 운영비*를 지원해 오고 있으나, 조례에는 운영비 지원에 대한 근거가 없음.

* 2019년 15백만원, 2020년 18백만원, 2021년 18백만원, 2022년 16백만원

- 이에 본 조례안은 조례상에 운영비 지급에 대한 명확한 근거규정을 마련하여 상위법과 조례를 일치시키고자 하는 것으로, 법적·내용적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됨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“생략”

5. 토 론 요 지 : “생략”

6. 심 사 결 과 : “원안가결”

7. 소 수 의 견 요 지 : “없음”

8. 기타 필요한 사항 : “없음”

9. 심사보고서 첨부서류

- 「충청북도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

충청북도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충청북도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 중 “「대한민국 재향군인회법」 제16조에 따라 재향군인회에 지원할 수 있는 사업”을 “「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」 제16조에 따라 재향군인회의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”으로 한다.

제2조제1호 중 ““재향군인“이라 함은 「대한민국 재향군인회법」”을 ““재향군인“이란 「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」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2호 중 ““재향군인회“라 함은”을 ““재향군인회“란”으로 한다.

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이라 한다)은”을 “라 한다)는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4호 중 “기타”를 “그 밖에”로 한다.

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금을”을 “필요한 비용과 운영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으로”로 하고, 같은 조 제3호부터 제5호까지를 각각 제4호부터 제6호까지로 하며, 같은 조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, 같은 조 제6호(중전의 제5호) 중 “기타”를 “그 밖에”로 한다.

3. 재향군인회 운영비

제6조 중 “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”를 “를 따른다”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재향군인에 대한 예우에 관한 사항과 「대한민국 재향군인회법」 제16조에 따라 재향군인회에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을 정함으로써 도민의 안보의식 및 애국정신 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.</p>	<p>제1조(목적) ----- ----- 「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」 제16조에 따라 재향군인회의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----- ----- --.</p>
<p>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.</p> <p>1. “재향군인“이라 함은 「대한민국 재향군인회법」(이하 “법“이라 한다) 제5조에 따라 회원의 자격을 갖춘 자를 말한다.</p> <p>2. “재향군인회“라 함은 법 제6조에 따라 조직된 “충청북도 재향군인회“ (이하 “재향군인회“라 한다)를 말한다.</p>	<p>제2조(정의) ----- -----.</p> <p>1. “재향군인“이란 「대한민국 재향군인회법」----- ----- --.</p> <p>2. “재향군인회“란 ----- ----- -----.</p>
<p>제4조(예우) 충청북도지사(이하 “도지사“이라 한다)은 재향군인의 명예심과 자긍심을 고취하고 나라사랑 정신을 선양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예우를 할 수</p>	<p>제4조(예우) ----- -----라 한다)는 ----- ----- -----</p>

<p>있다</p> <p>1. ~ 3. (생략)</p> <p>4. <u>기타</u> 재향군인의 공지와 자부심 고취를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</p>	<p>---</p> <p>1. ~ 3. (현행과 같음)</p> <p>4. <u>그 밖에</u> ----- ----- -----</p>
<p>제5조(예산의 지원) 도지사는 재향군인회가 추진하는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.</p> <p>1.·2. (생략)</p> <p><신설></p> <p>3.·4. (생략)</p> <p>5. <u>기타</u> 도지사가 재향군인의 공지와 자부심 고취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</p>	<p>제5조(예산의 지원) ----- ----- ----- <u>필요한 비용과 운영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으로</u> ----- -----.</p> <p>1.·2. (현행과 같음)</p> <p>3. <u>재향군인회 운영비</u></p> <p>4.·5. (현행 제3호 및 제4호와 같음)</p> <p>6. <u>그 밖에</u> ----- --</p>
<p>제6조(준용)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「충청북도 지방보조금 관리조례」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.</p>	<p>제6조(준용) ----- ----- ----- -----를 따른다.</p>

관계법령 발췌

□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

제1조(목적) 이 법은 대한민국재향군인회를 설립하여 재향군인 상호 간의 상부상조를 통한 친목을 도모하고 회원의 권익을 향상시키며 국가발전과 사회공익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5조(회원의 자격) 회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.

1. 육군·해군 및 공군의 예비역
2. 보충역 또는 전시근로역으로 소집되어 군복무를 마친 자
3.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퇴역 또는 병역이 면제된 장교·준사관(準士官)·부사관(副士官) 및 병(兵)

제6조(조직) ① 재향군인회에 본부, 시·도회, 시·군·구회 및 읍·면·동회를 두며,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장에 근무하는 자를 위하여 직장 규모에 따라 직장지회(職場支會)·연합분회(聯合分會) 또는 분회를 둘 수 있고, 해외거주자를 위하여 지역별 규모에 따라 해외지회·연합분회 또는 분회를 둘 수 있다.

- ② 재향군인회는 수도권에 본부를 두고, 특별시·광역시·특별자치시·도 및 특별자치도에 시·도회를 두며, 시·군·구(자치구를 말한다)에 시·군·구회를 두고, 읍·면·동에 읍·면·동회를 둔다.

제16조(재정) ① 재향군인회의 재정은 회원의 회비, 사업수입, 그 밖의 수입
으로 충당한다.

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재향군인회의 운영 등에
필요한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.

③ 삭제